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요양·정신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안내

제2-1판
(2023. 1. 20.)

- 이 안내서는 요양·정신의료기관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입원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관리 절차와 방법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의료기관은 본 안내서를 참고하여 기관의 상황에 적합한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 안내서에서 제시하는 사항 외에는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및 분야별 관련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방지 대책 실행	5
1. 의료기관 관리 대책과 실행전략 마련	5
2. 감염예방·관리 교육·홍보, 실천 확인	5
3. 구조적·행정적 관리	6
4. 손 위생과 개인보호구	7
II. 대상자별 관리	9
1. 일반환자 관리	9
2. 간병인력 관리(간병인, 상주보호자)	10
3. 방문객, 면회객, 자원봉사인력 등 관리	11
4. 직원 관리	11
III. 환경관리	12
1. 청소와 소독·환기	12
2. 의료폐기물 및 세탁물 관리	14
3. 의료기관 내 공용장소 관리	14
IV. 확진자 발생시 감염관리	15
1. 초기 대응	15
2. 코로나19 환자 관리	16
3. 코로나19 사망자 관리	18
[붙임]	20
1. 코로나19 개인보호구의 사용	20
2.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	26
3. 멸균 및 소독 방법	28
4. 환기횟수와 환기율 및 비말핵 농도의 감소	29
[참고]	30
코로나19 방역대응점검표(의료기관용)	30

요양·정신병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요약

I.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방지 대책 실행	
1. 의료기관 관리 대책과 실행전략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관리 교육과 훈련을 받은 담당 인력을 최소 1인 이상 지정 코로나19 대책실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 인력 동원, 물품 등 조정
2. 감염예방·관리 교육·홍보, 실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예방·관리 및 코로나19 증상발생시 대응방법 직원교육·훈련 직원의 감염예방수칙 이행 현황 평가·환류 환자·보호자·간병인 대상 감염예방 수칙 교육 및 적극 홍보
3. 구조적·행정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 내 장소별 위험평가, 출입관리, 구역분리, 인력관리 전략 마련 의료기관 내 각 장소별 감염예방 수칙 안내 환기설비 확인, 환기 최대화(가능하다면 전배기 실시)
4. 손 위생과 개인보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 접촉 및 모든 처치 전·후 손위생 시행 김염위험 평가 기반 각 장소별 직원에 대한 보호구 사용규정 마련
II. 대상자별 관리	
1. 일반환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환자 대상 표준주의 적용, 의심/확진 환자는 접촉·비밀주의 추가(에어로졸 발생 시술시에는 공기주의 추가 적용) 신규 입원환자 관리방안(코로나19 감염관련 요인 확인 등) 마련 환자의 병동 및 병실 이동 제한
2. 간병인력 관리 (간병인, 상주보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병인력 감염예방 수칙 교육, 이행 확인 감염 의심시 행동요령, 업무제한 및 선별검사 규정 마련
3. 방문객, 면회객, 자원봉사 인력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 모든 방문자는 항상 마스크 착용 면회 규정 마련, 방문객 감염예방 수칙 준수
4. 직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증상 발현과 동거인 확진자 여부 등 확인 감염 의심시 행동요령, 업무제한 및 선별검사 규정 마련
III. 환경관리	
1. 청소와 소독·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주 접촉하는 모든 표면 소독제로 닦고 공조설비에 따라 환기
2. 의료폐기물 및 세탁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 및 세탁물 취급 직원 감염예방 교육 준수 폐기물 및 세탁물 처리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p>*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폐기물관리법」 등</p>
3. 의료기관 내 공용장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용 장소(공용화장실, 공용 사워실, 배선실 등) 이용 시 방역 수칙 준수 내부 식당 이용시 방역수칙을 마련하여 실천

IV. 확진자 발생시 감염관리

1. 초기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진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 후 확진자 관리, 접촉자 관리, 격리범위·방법 등 대응절차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을 참고
2. 코로나19 환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환자(격리기간 내)는 코로나19가 아닌 환자와 병실 분리 병실은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격리실(1인실 또는 다인실) 적용 에어로졸 발생 시술은 가급적 음압병실에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보호구 착용, 시술 중 병실 문닫기, 시술 후 환기 (시간당 12회 공기 순환을 기준으로 30분) 후 소독 접촉상황과 위험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3. 코로나19 사망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신의 사후처치 등 시신과 접촉이 필요한 경우, 접촉 상황에 따라 권고되는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시신을 이동하기 전 린넨천으로 감싸거나 시신백에 수습 퇴실한 병실소독은 확진자 환경소독과 동일하게 시행

I.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방지 대책 실행

1. 의료기관 관리 대책과 실행전략 마련

-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최소화) 위한 대책 마련, 실행방안 구체화
 -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담당할 감염관리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인력을 최소 1인 이상 지정
 - 담당 인력은 가능하면 전담으로 권고하며, 타 업무 겸임하는 경우 감염관리 활동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분장
 - 감염관리 교육·훈련은 질병관리청 교육 프로그램 등 이수
 - 대책 실행을 위한 조직·인력을 갖추고 역할을 분장하며 책임을 명확히 규정

▶ [참고] 코로나19 방역대응점검표(의료기관용) 참조

- 코로나19 대책 실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및 인력 자원 동원 등 지원 분야를 확인하여 조정
 - 입원환자(전입 포함) 관리 절차(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 병실 배치 등)
 - 격리병실, 확진자 진료 및 치료를 위한 지정구역 운영
 -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관리 절차와 인력 배정 등
- 코로나19 대응 관련 시설·설비 및 물품 등이 적재적소에 공급되는지 확인하고 관리
 - 담당자는 손소독제, 개인보호구, 청소와 소독물품이 적절히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
(모든 병실, 식당, 치료실, 공용 공간 등)

2. 감염예방·관리 교육·홍보, 실천 확인

-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감염예방·관리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
 - * 직원(정규직, 계약직, 협력업체), 실습생, 자원봉사자 등
-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증상 발생시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
 - 코로나19에 대한 이해와 감염예방 방법(손위생과 호흡기 예절을 포함한 표준주의 및 전파경로별 주의지침)을 교육
 - 개인보호구의 올바른 선택과 착·탈의에 대한 훈련을 시행

▶ 참조 : '코로나19 감염예방 교육자료'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알림자료 > 홍보 > 교육자료 (슬라이드 및 동영상 강의)
- 코로나19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의료기관 > 교육 동영상

- 직원의 감염 예방 수칙(손위생, 개인보호구 착·탈의 등)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환류
- 환자, 간병인력 대상 감염 예방 수칙(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위생 등)을 교육하고 실천 여부를 확인
- 손위생과 호흡기 예절 등 감염원 관리(Source control)를 위한 홍보전략을 시행
 - 출입구와 대기실, 엘리베이터, 카페와 같은 취사 장소 등에 감염예방 수칙* 게시(포스터 등)

3. 구조적·행정적 관리

- (위험평가와 기술적 개선) 의료기관 내 장소별 위험평가를 하고 직원과 환자 등이 확진자로부터 감염에 노출될 위험을 없애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구조적 장치와 동선 분리 등을 마련
- (출입 관리) 확진자 또는 방문객 동선 관리 및 이동 동선을 최단으로 설계
- (과밀 방지) 진료/검사 등 대기 구역의 과밀 방지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
 - 대기 환자 수를 최소화하여 가능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
 - 대기 구역 내 공용 잡지, 인형 등 진료 관련 필수물품이 아닌 것은 비치하지 않음
- (방역 수칙) 의료기관 내 각 장소에 요구되는 감염예방 수칙(마스크 착용 등)을 안내
- (구역 분리)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관리 구역은 최대한 일반 환자구역과 분리(병동 분리, 구역 구분, 이동경로 분리 등).
- (인력 관리) 가능하다면 코로나19 관리 인력을 일반환자 관리 인력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라운딩이나 공용 장소 이용시 교차 기회를 최소화
- (환기) 장소별 환기 설비와 환기 요건을 확인하고 환기횟수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며 가능하다면 전배기를 통해 공기순환 실시
 - 가능한 자주 창문을 열어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도록 환기
 - 냉난방기 등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공기의 흐름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어 환기, 풍향 등에 주의하여 사용
 - 냉난방기 바람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바람 방향을 천정 또는 벽으로 향하도록 사용, 가능한 바람의 세기를 낮추어 사용
 -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 병행이 가능한 경우 병행 실시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필터 유지관리 및 필터 교체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보호 조치 및 위생수칙 준수

〈 기계환기 설비 설치 유무에 따른 실내 환기 지침 〉

▶ (기본사항) 기계환기 설비 미설치 시설 포함

- 하루에 최소 3회, 회당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
- 밀집도에 따라 창문/출입문 개방 등의 자연환기를 추가로 시행
- 자연환기 시 시설 출입문 및 전·후면 창문을 개방하여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환기
- 냉·난방 중에도 주기적으로 환기
- 풍향은 사람이 없는 방향(천장 또는 벽)으로 바람의 세기를 가능한 약하게 설정
- 냉·난방 중에 환기하지 않는 경우 비말이 재순환 되면서 감염 확산 위험 증가
- 기계환기 설비가 없는 경우 환기팬 등을 이용하여 내부 공기를 외부로 배출

▶ 기계환기 설비 설치 시설

- 환기설비 외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 공기로 환기
- 외기 도입량과 배출량을 모두 100% 설정 (내부 순환모드 운전 지양)
- 고위험 시설에서는 고성능 필터(HEPA) 사용 권장, 주기적 교체
- 필터와 카트리지 사이에서 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에 유의할 것
- 위생 배관을 통한 기류 이동이 없도록 조치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지침(자자체용)」 VII. 환경관리(소독·환기)

4.2. 개인보호구

- 개인보호구는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올바로 사용

▶ [붙임 1] 코로나19 개인보호구 사용

- 의료기관 내 감염위험 평가에 따라 각 장소별로 직원에 대한 보호구 사용규정을 마련
- 구역별 적합한 보호구 사용을 안내
- 착용 방법과 탈의절차 및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비치
- 보호구 교체가 필요한 상황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교육

〈 코로나19 개인보호구 사용 〉

권고 보호구	KF94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방수성 긴팔가운
사용목적에 따른 권고수칙	<p>① 착용한 사람을 감염으로부터 보호</p> <p>→ • 환자구역 진입 전에 착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촉상황에 맞게 보호구를 선택• 올바로 착용(마스크 밀착, 가운 끈 조절 등)• 환자 접촉 중 보호구 재조정 금지• 자가오염이 되지 않도록 천천히 제거 <p>② 다른 사람과 주변환경으로 감염 전파 방지</p> <p>→ • 오염된 보호구로 다른 사람이나 주변환경 접촉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 간 장갑 교체, 오염된 경우 가운 교체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액누출 시술 또는 기도삽관, 기관지내시경, 심폐소생술 등 고농도 에어로졸 발생 시술시 고효율 호흡기보호구 선택• 코로나19 환자관리 구역에서 착용했던 개인보호구는 환자 관리구역 이탈 시, 탈의

4. 손 위생과 개인보호구

4.1. 손 위생

- 손 위생은 ①환자 접촉 전·후, ②무균적 시술 전, ③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기타 오염물질과 접촉한 후, ④환자의 주변 환경에 접촉된 경우, ⑤ 장갑 착용 전·후에 반드시 시행
- 손에 혈액이나 체액이 묻거나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는 경우, 아포를 형성하는 세균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손을 씻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문지르는 방법으로 손소독 시행
- 물과 비누를 이용하는 경우, 손의 모든 표면에 비누액이 접촉하도록 15초 동안 문지르고 물로 헹굼.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하는 경우 손의 모든 표면에 소독제를 바르고 마를 때까지 문지름

II. 대상자별 관리

1. 일반환자 관리

- 환자는 의료기관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확인
 - 특히 기침, 재채기 콧물 등 호흡기 증상 환자는 의학적으로 가능한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용 공간으로 나올 경우 착용 상태를 확인
 -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 방법과 교체 시기, 버리는 방법 등을 교육
- 모든 환자에 대해 표준주의를 적용하며, 의심/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접촉주의 및 비밀주의를 추가하고 에어로졸 발생 시술시에는 공기주의를 추가 적용

▶ [붙임 2]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

- 새로 입원하거나 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관련 요인*을 확인
 - * 예시) 증상, 동거인 확진자, 이전 확진력 등
- ▶ 코로나19 관련 증상
 - (주요 증상) 발열(37.5 °C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 (그 외 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 진료 및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
 - 감염이 의심되면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다른 환자 및 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
- 재원중인 환자는 코로나19 증상, 확진자 접촉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선별 검사(신속항원검사 포함)를 시행
- 검사, 시술 등을 목적으로 환자가 이동하는 경우, 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환자가 가능한 경우) 손위생 후 이동하며 주변 환경 접촉을 최소화
- 식당에서의 단체 식사보다는 개별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권장되나,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격을 넓히고 가림판 등을 활용하여 시간차를 두어 밀집을 최소화

2. 간병인력 관리(간병인, 상주보호자)

- 해당 기관 업무 시작 전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교육을 시행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때(증상 및 동거인 확진자 발생 등)의 대응 절차, 업무제한 및 선별검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 근무 도중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보고하고 업무를 중지한 후 검사 실시. 만약 자택에 있는 경우, 보고하고 규정에 따름
- 간병인력이 손 위생과 개인보호구의 사용 방법 등 감염예방 수칙을 교육하고,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어 관리
- 간병인력의 식사 시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안내(보호자식, 구내 식당 등)
 - 식사는 모여서 하지 않으며, 식사 중 대화를 금하고, 음식물은 나누어 먹지 않음
- (손위생) 환자 접촉 전·후, 환자 주변 환경이나 오염물질 처리 후 등 매 상황마다 손위생을 철저히 하고, 다음 상황에서는 반드시 손위생 시행
 - 환자 접촉 전·후(식사를 보조하거나 투약 등 포함)
 - 병실에서 나오기 전과 들어가기 전
 - 병실 내 공용 공간(물품) 및 다른 환자 주변 환경을 만지기 전·후
 - 식음료 섭취 전
 - 손이 오염될 수 있는 행위를 한 후(배설물을 처리하거나 화장실 사용 후, 마스크를 만진 후)
- (마스크 착용) 출근 시부터 퇴근 시까지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덮을 수 있게 착용하며, 마스크 안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교육
 -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식사나 음료 마시는 등)에서는 거리두기(최소 1미터 이상)를 엄격히 준수하고 대화를 금지
 -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것으로 사용하며(가능한 보건용 마스크 권장), 매일 새것으로 교체하고, 젖거나 오염이 발생하면 바로 교체
- (장갑)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 착용한 용무가 끝나는 즉시 벗고 손위생 실시, 사용한 장갑을 벗지 않고 병실 환경표면을 만져서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 장갑 제거시 곁면이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말아서 제거하여 폐기

▶ [붙임 1] 코로나19 개인보호구 사용 >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 안내

- (방역수칙) 담당 환자 외 다른 환자의 침상과 다른 병실에 가지 않으며, 각종 모임, 회식, 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방역수칙을 준수

3. 방문객, 면회객, 자원봉사인력 등 관리

-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
- 코로나19 증상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 (면회객) 기관별 면회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안내
 - 면회객은 코로나19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이 없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감염관리 수칙을 준수

▶ 기관 및 시설별 면회 관련 규정 참고(보건복지부)

- (업무상 방문객) 방문객은 마스크 착용과 손위생 등 감염관리 수칙을 준수하고 가급적 짧은 시간에 방문을 종료
 - 방문객은 코로나19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이 없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감염관리 수칙을 준수
 - 방문객은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와는 직접 접촉하지 않음
 - 불가피하게 격리실 및 코로나19 진료구역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 * 이 경우에는 개인보호구 사용 방법과 손위생에 대한 교육을 받고 출입
- (실습 학생·교육관리자·자원봉사 인력 등) 기관별 실습학생 및 자원봉사 인력 등에 대한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대응 절차를 교육
 -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때 행동요령, 업무제한 및 선별검사 등
 - 근무 도중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보고하고 업무를 중지한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만약 자택에 있는 경우, 보고하고 규정에 따름

4. 직원 관리

- 기관 내 모든 직원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 마스크는 환자접촉 상황과 구역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선택

▶ 의료기관 근무인력의 마스크 착용 준수사항

- 마스크는 업무 중 지속적으로 착용한다
- 마스크가 젖었거나 오염된 경우(환자의 비말이 묻는 등) 즉시 교체한다.
- 식사나 음료를 마실때는 마스크를 벗어 별도의 봉지 등에 넣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 마스크를 벗기 전과 식사를 끝내고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기 전에 손위생을 한다.
 -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는 반드시 거리두기(최소 1미터 이상)를 준수한다.
- 업무 종료 후에는 의료기관을 나오기 전에 마스크를 벗어 폐기하여, 의료기관에서 착용하던 마스크를 집으로 가져오지 않는다.
- 코로나19 환자 및 의심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경우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범위(붙임1)에 따라 보호구를 착용

-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 코로나19 증상과 확진자 동거인 여부 등을 확인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때 행동요령 마련하고, 업무제한 및 선별검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 근무 도중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기관별 절차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업무를 중지한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만약 자택에 있는 경우 보고하고 규정에 따름

III. 환경관리

1. 청소와 소독·환기

- 청소나 소독을 담당하는 직원은 감염예방 교육을 이수
- 환경 청소 및 소독 시 개인보호구를 착용
 - 일상 소독 시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등을 착용하고, 환자 이용 공간 소독 시 오염 정도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방수성 앞치마, 장화, 고글 등을 추가
- 청소·소독 시작 전, 중, 후에는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 기계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자연환기와 기계환기를 병행
- 병원균의 분무 발생을 막기 위해 빗자루나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청소 방법보다는 청소용액이나 소독제를 적신 걸레를 이용하여 청소를 시행
- 걸레(천 또는 일회용 포 등)에 희석한 소독제를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접촉하는 모든 표면을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물로 적신 천(형겹 등)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음
 - * 소독제 종류에 따라 소독액 접촉시간 권고에 따름
- 청소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을 사용하거나 전용으로 사용
 - 단, 청소 도구를 재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청소도구는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 후 건조 시켜 보관
- (소독의 시점)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로 오염된 환경 표면은 즉시 시행하며, 환자가 재실하고 있는 환자 주변 표면은 적어도 매일 시행하며 접촉이 빈번한 표면은 자주 소독
- (퇴실 후 병실 소독·환기)
 - 치물재질(침구류 커버, 커튼 등)은 교체
 - 오염이 눈에 보이면 일회용 타올(wipe) 등으로 제거하고 필요시 세제를 사용
 - 표면에 구멍이 없고 매끈한 경우 0.1% 차아염소산나트륨(1,000ppm)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환경 소독제를 적신 일회용 타올 또는 밀걸레 등으로 철저히 닦음

- 표면이 매끈하지 않고 구멍이나 닦기 어려운 내부 구조가 있는 경우 소독액에 침적하거나 새것으로 교체
- 소독이 끝나면 최소 1시간 이상 환기(시간당 6회 환기 기준)를 한 후 물을 적신 깨끗한 일회용 타올로 표면을 닦음
- 점검목록을 활용하여 빠짐없이 소독과 환기▶가 되었는지 점검

▶ [붙임 4] 환기횟수와 환기율 및 비말핵 농도의 감소

- (환경 소독제) 코로나바이러스용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을 사용하며 제품별 사용량·사용 방법·주의사항을 준수

▶ 참고 : (소독제 목록 및 정보제공) 환경부 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

[일상 소독 및 코로나19 환자 장소 소독 관리 참고사항]

사업장	예방을 위한 일상 소독	코로나19 환자 장소 소독
소독 계획	소독 범위 계획수립	환자 접촉 범위를 파악하여 소독 범위·계획수립
소독 교육	업무절차서 및 감염예방 교육	
개인 보호구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 청소방법과 범위에 따라 추가	* 생활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기운, 방수성 앞치마, 장화, 고글 등 착용
소독제	· (소독제 선택) 환경부가 승인하는 소독제를 사용(설명서의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 - 차아염소산나트륨(원액 5%) 1,000ppm 희석액(1분간), 부식되는 표면, 국소 범위인 경우 알코올(70% 에탄올) 사용 가능	
자주 사용하는 표면	· (기본 원칙) 비누와 물로 세척(특히, 더러워진 곳) 등 청소를 한 뒤 소독실시 · (일상 표면)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전화기,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엘리베이터 버튼 등 · (화장실 표면) 수도꼭지, 문고리, 변기 덮개, 육조 등	

- 소독 이후 사용 재개 시점의 결정은 소독제별 특성이 상이하므로 제품별 주의 사항과 해당 장소의 환기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1,000ppm이상) 사용하여 소독하는 경우 충분히 환기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지침(자자체용)」/「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 시설 소독 안내」

2. 의료폐기물 및 세탁물 관리

2.1. 기본 원칙

- 세탁물 및 폐기물을 취급하는 직원은 감염예방 교육을 이수
- 세탁물을 취급하는 직원은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개인보호구 제거 후 손위생 수행
-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폐기물관리법」)
- 환자의 체액이나 배설물을 하수배출규정에 따라 하수설비에 폐기하며, 단, 체액이나 배설물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이나 사람에게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2.2. 의료폐기물 관리

- 격리의료폐기물의 관리규정에 따름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지침(자자체용)」/「코로나바이러스-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환경부)」

2.3. 세탁물 관리

-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과 같이 세탁이 가능한 직물은 지침에 따라 세제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 후 재사용
-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커튼 등 세탁 가능 직물은 세제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
- 환자가 사용한 매트리스, 베개, 쿠션 또는 카펫은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

▶ 참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3. 의료기관 내 공용 장소 관리

- 공용 장소(공용화장실, 공용 샤워실, 배선실 등) 이용 시 방역 수칙을 준수
- 이용 전 손위생을 하고 마스크 착용을 유지
- 공용 샤워실의 경우는 마스크를 벗을 경우 대화하지 않음
- 타병동으로 이동하여 공용 공간 이용하지 않음
- 배선실은 습기가 있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여 교차 감염이 위협이 크므로 다음 사항을 준수
 - 배선실에서 식음료 섭취 금지
 - 설거지는 제한: 물컵이나 물병 정도 간단한 세척으로 제한

- 싱크대 사용 후는 세척제로 오염된 부분을 닦고 손위생 시행
- 남은 음식은 싱크대 표면이나 정수기 부분을 오염시키지 않게 주의하며 폐기
- 공용물품 사용 후 손소독 시행

○ 내부 식당 이용시 방역수칙을 마련하여 실천

- 음식 섭취 시 대화 자제
- 전체 부서원이 다같이 식사하지 않기(2~3조로 나누어 식사)
- 거리두고 줄서기
- 가림막이 없는 상태에서 마주보고 앉지 않기(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앉기)
- 직원 식당에서는 배식 시 손소독 시행

○ 공용 샤워실은 필요한 경우에 제한하여 사용하고 유증상자 등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 샤워실 사용 후 다음 사람이 사용할 경우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용
- 사용 후 접촉한 표면은 소독
- 충분한 환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문을 개방
- 샤워 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

IV. 확진자 발생시 감염관리

1. 초기 대응

○ 의료기관 내 입원환자 중 확진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 후 대응 절차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을 참고

▶ 참고 :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지침(지자체용)」 감염병 환자 신고·보고 체계, 확진자 관리

- 이동이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이동하며, 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착용
- 확진자 병실 및 기타 접촉한 환경의 표면은 소독하고 환기

○ 감염취약시설로 분류된 의료기관 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접촉자 관리, 격리범위 및 방법 등 대응 절차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을 참고

▶ 참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V.확진자 대응방안 부록36. 기타 시설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2. 코로나19 환자 관리

2.1. 격리 원칙

- 코로나19 환자(격리기간 중인)는 코로나19가 아닌 환자와 병실을 분리
- 코로나19 환자의 격리는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격리실(1인실 또는 다인실 공동격리)을 적용
 - 단, 에어로졸 발생으로 인해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음압 격리를 권고
- 의료기관에서는 음압격리실과 일반격리실의 자원상황에 따라 음압격리실 사용 우선 대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일반격리실 사용 시 감염예방을 위한 방안(환기 등)을 마련
 - ▶ 에어로졸 발생 가능한 시술이 필요한 경우, 심한 호흡기 증상으로 비말 배출 위험이 높은 환자 등

2.2. 병실

○ 코로나19 환자는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격리실에 배정

- ◆ 코로나19 환자의 병상은 병동 전체를 지정하거나 격리병실을 인접 병실로 묶어서 지정하여 의료진의 편의, 탈의 공간을 포함한 동선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 고려
 - 일반격리실 사용 시 감염예방을 위한 환기요건(환기율, 재순환 방지 등)을 갖추고 병실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
 - ▶ 시간당 12회 이상 공기 순환 시설을 갖춘 병실을 권장하며, 가능하다면 100% 전배기 가동하고 안 될 경우 해당 격리실의 공조를 차단하여 재순환을 방지

○ 격리실 밖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전화 등)을 마련

-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일반격리실 내에서 탈의하는 경우 탈의 장소(예: 격리실 내 문 옆)를 지정하여 경고표식(테이프 등)을 부착
- 병실에는 물품 및 가구 비치를 최소화하고, 해당 환자 전용 청진기, 체온계, 혈압계를 구비
- 사용한 종이 수건, 휴지, 장갑 처리를 위한 격리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와 손 위생을 위한 물품(액체비누, 종이 수건, 손소독제 등)을 구비
- 입원치료 기간 동안 환자가 병실 밖으로 나오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
- 환자 이동 시 환자에게 수술용(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씌우고, 위험평가에 따라 필요시 가운, 장갑 등을 착용시킴
 - 환자가 이동 시 보호자와 동행하는 경우, 보호자에게도 의료진과 같은 수준의 개인보호구를 착용시킴
- 환자가 코로나19 격리기준에 따라 격리해제된 이후에는 일반 병실로 이동하고 표준주의 적용

- ◆ 격리 기간이 끝났지만 발열이 지속되고 호흡기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격리 연장을 고려하며, 격리 해제 이후 환자의 임상 증상 등 상태에 따라 일반 병실로 이동 전 가능한 경우 일시적으로 별도 병실 사용을 고려

- 병동 내 일반환자 구역과 확진환자 구역이 있는 경우 격리실 출입 제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2.3. 개인보호구

- 코로나19 환자를 접촉하는 모든 인력은 개인보호구(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의 올바른 사용과 착탈의 방법 교육·훈련을 사전에 이수
- 진료, 시술 및 활동에 따라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
 - 진료 장소, 환자 구역별 적합한 보호구의 선택, 착용 방법을 계시
- 코로나19 환자 관리시 전신보호복은 권고되지 않으며, 장시간 고농도 에어로졸 발생 시술이나 처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N95 이상의 고효율호흡기(PAPR 포함) 보호구 권고
- 개인보호구는 별도로 준비된 공간(전실 등)에서 착용하고 입실 전 착용 상태를 재확인
- 개인보호구 탈의 시 오염된 부분이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탈의하며, 각 보호구는 제거하는 즉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바로 폐기
 - 탈의 구역에는 탈의절차 안내문과 손소독제, 전신거울 등 필요한 물품을 비치

▶ [붙임 1] 코로나19 개인보호구 사용

2.4. 에어로졸 발생 시술시 관리

- 에어로졸 발생이 높은 시술은 기관내 삽관 또는 발관, 기관절개술(삽관 또는 제거), 기관지 내시경 검사, 객담 유도(sputum induction), 심폐 소생술 등이 해당
- 에어로졸 발생 시술은 음압격리실에서 수행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염예방을 위한 환기요건(환기율, 재순환 방지 등)을 갖추고 일반격리실을 사용

▶ 시간당 12회 이상 공기 순환 시설을 갖춘 병실을 권장하며, 가능하다면 100% 전배기 가동하고 안 될 경우 해당 격리실의 공조를 차단하여 재순환을 방지

- 에어로졸 발생 시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N95 등급 이상의 마스크,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필요시 모자 추가)를 착용
 - 필요시 PAPR(Powered Air-Purifying Respirators;PAPRs) 사용 가능
- 에어로졸 발생 시술을 시행할 경우, 출입문을 반드시 닫아야 하며 꼭 필요한 출입 외에는 문을 열지 않도록 주의
- 에어로졸 발생 시술 후에는 에어로졸이 충분히 배출되도록 환기(시간당 12회 공기 순환을 기준으로 30분) 후 소독

▶ [붙임 4] 환기횟수와 환기율 및 비말핵 농도의 감소

3. 코로나19 사망자 관리

3.1. 임종 단계

- 환자 상태가 임종에 가까워지면 보호자에게 알리고, 사망 시 감염 방지를 위한 시신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임종 참관 여부를 확인
- 임종 면회를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보호구 착용 등 감염관리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지도
 - 환자와의 접촉 범위에 따라 보호구 종류를 결정. 접촉없이 거리두기를 하며 참관하는 경우는 마스크를 필수 착용(필요시 장갑)하며 그 외에는 필요에 따라 추가
 - 유족 중 감염성 질환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면회를 위한 이동 동선과 보호구 착용 등 규정을 마련

3.2. 시신 사후 처리 및 수습

- 의료기관은 유족에게 사망 설명하고 고인의 애도를 위한 유족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애도 기회를 보장하며, 시신처리 시점은 협의
- 시신의 사후처리 등 시신과 접촉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감염예방·관리 조치를 적용
 - 접촉 상황에 따라 권고되는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시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사항」 참조

- 시신 접촉 중 유족 등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 유지(1.5미터 이상 권장)
- 시신을 움직이게 되는 경우 사전에 시신의 호흡기 비말이 배출되지 않도록 천이나 마스크 등을 이용하여 입과 코를 덮음(천이나 마스크는 훌러내리지 않도록 고정)

<시신의 사후처리 >

- ▶ 개인보호구(긴팔 가운,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 안면보호구 또는 고글, 장갑, 필요시 신발덮개 등) 착용
- ▶ 시신의 모든 튜브, 배액관, 카테터 등 제거
 - 날카로운 장치를 제거할 때는 찔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제거 즉시 전용 폐기물함에 폐기 (보철물, 이식물 등은 제거하지 않음)
- ▶ 시신의 배액 부분을 포함한 외부 상처는 소독하고 체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표면을 비투과성 물질로 드레싱 처리
- ▶ 구강 및 비강의 분비물을 필요한 경우 부드럽게 흡인하여 제거
- ▶ 체액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신의 구강, 비강 및 직장을 막고, 피부에 남은 체액은 닦아낸 후 건조

- 시신을 이동하기 전 린넨천으로 감싸거나 시신백에 수습

〈시신백 사용 권고 상황〉

- ▶ 시신의 체액 누출이 많거나, 부검 후, 장례 전 일정기간 시신을 보관해야 할 경우, 업무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 시신의 관리(수습, 이동 등)에 관여하는 경우 등

〈 시신백 사용시 고려사항 〉

- ▶ 특별상황(다량의 체액 누출 또는 장거리 이송 등)에는 이중 시신백의 사용을 권고하며, 시신백 바닥에 흡습포를 확인하고 체액 유출이 많은 등 필요한 경우 흡습포 추가
- ▶ 시신백의 재질은 미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플라스틱 이상으로 견고하여야 함
* U자형 지퍼식은 중앙 지퍼식보다 시신과의 접촉이 적음

- 시신백에 시신 수습 시 곁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 시신백 곁면 오염 주의 〉

- ▶ 시신백의 곁면이 시신의 체액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시신백의 곁면과 시신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함
- ▶ 시신백의 지퍼를 닫은 후 곁면은 소독제를 이용하여 닦을 것
- ▶ 이송카트에 체액 등 오염이 있는 경우 소독제로 닦을 것

- 린넨천으로 시신을 감싼 경우 분비물 등으로 젖은 부위가 없는지 재확인

- 시신 이송 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시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사항〉에 따라 개인보호구를 착용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시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사항 〉

구분	상황, 행위	수술용 마스크	KF94 동급이상의 마스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비닐 에이프런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장례	사망 확인(검안)		●	●	●	●
	시신 이송	●	●	●	●	●
	시신 수습 시신 위생관리 수의 입히기 입관 시	●	●	●	●	●
	시신 접촉	●	●	●	●	●
	시신백 이송, 관 운구	(필요시)	(필요시)			
	청소·소독	●	●	●	●	●
폐기물	의료폐기물 포장, 취급	●	●	●	●	●
	의료폐기물 운반	●		●	●	●

3.3. 환경 소독

- 퇴실한 병실소독은 확진자 환경소독과 동일하게 시행

- ▶ 참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Ⅲ. 단계별 조치사항

붙임 1

코로나19 개인보호구의 사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구분	상황, 행위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전신 보호	눈 보호	
수술용 마스크▶	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전동식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검역	검역(검역조사)		●		●	
	검역(역학조사)		●		●	●
선별 진료소	선별진료소 접수, 안내		●		●	●
	선별진료소 진료, 간호		●		●	●
이송	이송(구급차 운전자) ¹⁾		●		●	
	확진/의심 환자 이송(검역관, 보건소직원, 응급구조사 등)		●		●	●
	의심환자 동승 보호자	●				
진료	확진/의심환자 병실출입, 진료, 간호 등*		●		●	●
	에어로졸 생성 처치 ²⁾		● (선택 사용 가능)		●	●
	검사(X-ray 등 영상의학검사)		●		●	●
검체 관리	호흡기 검체 채취		●		●	●
	검체 취급(실험실, 검사실 등) ³⁾⁴⁾		●		●	●
	검체 이송(파손없이 포장된 검체)	●			●	
장례	시신 접촉		●		●	●
	시신백 이송, 관 운구	●			●	
청소·소독	청소 · 소독 ⁵⁾		●		●	●
폐기물	의료폐기물 포장, 취급		●		●	●
	의료폐기물 운반	●			●	●

* 확진/의심환자 병실 출입, 진료, 간호 등 : 환자와의 접촉이 없거나 에어로졸 생성 처치가 없는 진료 및 간호 등은 [감염관리 전문가] 또는 [감염관리위원회] 등 기관 내 감염관리 부서에서 논의한 후 개인보호구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6호,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 따른 수술용 마스크로 제한
1) 구급차 운전석이 차폐되어 있지 않거나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접촉의 기회가 있을 경우,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필요 시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추가) 착용
2) 에어로졸이 생성되는 처치는 기관삽관(endotracheal intubation), 심폐소생술, 기관지내시경술, 사체부검, 비침습적 양압환기(Continuous positive air pressure) 등을 말함
3) 검체 취급 실험실·검사실에서 개인보호구 선택,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실험실 생물안전지침」(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에 따름
4) ClassII급의 생물안전작업대 작업 시 가운(긴팔), 일회용 장갑 착용 Lee H, Ki C-S, Sung H, et al. Guidelines for the Laboratory Diagnosis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in Korea. Infection & chemotherapy. 2016;48(1):61-69.)
5) 병실, 구급차 등 청소·소독 시에 해당하여, 상황에 따라 방수성 앞치마 등 착용

□ 개인보호구의 종류와 용도

- 개인보호구는 호흡기, 눈, 손, 발을 포함한 전신과 의복을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고려하여 선택
 -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 마스크(N95 또는 KF94 이상),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장화 또는 신발커버 등
- 개인보호구는 질환별 또는 감염경로, 감염 노출 상황·행위, 용도에 맞게 보호구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
- 개인보호구별 특성과 용도

보호구	위해요소	특성 및 용도(indications for use)	참고사진
일회용 장갑 (Glove)	접촉	-손 오염 방지 -노출정도를 고려하여 재질 선택 -파우더 알러지 있을 경우 파우더 없는 제품 또는 나이트릴 제품 사용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Gown)	비말, 혈액, 체액이 전신이나 의복에 흡착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 되는 것을 방지	
장화 (Boots)	혈액, 체액이 신발에 흡착	-신발덮개 대신 착용 -바닥이 젖거나 오염이 심할 경우 -노출위험에 따라 선택	
모자 (Hair cap)	머리의 오염	비말이 머리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	
고글 (Goggle)	혈액, 체액이 눈의 점막에 흡착	-눈의 점막 오염 방지 -고글 재용 시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로 소독 후 사용, 보관	
안면보호구 (Face shield)	혈액, 체액이 눈의 점막에 흡착	- 눈의 점막과 안면부 오염 방지 - 노출 위험 정도에 따라 고글 대신 착용 - 안면보호구 재사용 시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로 소독 처리 후 사용, 보관	

□ 개인보호구 사용 원칙

-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제품을 제외하고 일회용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는 반드시 제조사 권고에 따라 소독 또는 멸균 처리
-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또는 공기매개주의)를 포함한 감염관리 방법 준수
-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려면 개인보호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이 중요함
 - 감염원과 접촉 전에 착용(예: 환자 접촉 전, 격리병실 밖)
 - 착용 할 때 보호구별 착용 방법 준수(특히, 호흡기보호구의 밀착 상태)
 - 사용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병원체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착용 상태에서 환자 이외의 주변을 접촉하여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벗을 때 본인의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제거(예: 격리병실 밖의 간의실 등)
-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무조건 오염으로 간주하여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의료폐기물상자에 버려 폐기되도록 함
- 모든 개인보호구는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파손되거나 오염된 개인보호구는 사용·보관하지 말고 폐기
- 사용한 개인보호구 중 재사용이 불가피하고 소독 처리가 가능한 장비에 한하여 적절한 소독 처리 후 사용
- 눈에 보이지 않게 손과 신체 일부, 의복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개인보호구를 벗은 후에 항상 손위생(손씻기 또는 손소독)과 개인위생 철저

보호구	위해요소	특성 및 용도(indications for use)	참고사진
호흡기보호구 :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비말 또는 에어로졸 흡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 입 점막을 통해 호흡 시 병원체 입자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 - 적용상황 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심/확진환자 격리병실 입실 시(의료 종사자, 방문객 포함한 모든 출입자) • 기침유도 시술시 • 에어로졸 생성 처치시 • 의심/확진환자 이송 시 등 	
호흡기보호구 : PAPR	에어로졸 흡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와 입의 점막을 통한 감염원 흡입 방지 - 전지충전, 필터교환, 장비 소독 등 철저한 점검, 관리가 필요함 - 파손, 오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사전 수리, 교체 또는 폐기하여야 함 - 재사용이 불가피하면 소독 처리 후 사용, 보관 	

□ 개인보호구 착의(착용) 및 제거 원칙

○ 착의(착용)

-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에 따라 미리 물품을 준비하여 올바른 착용 순서와 방법으로 착용

- 머리는 단정히 묶거나 고정하고 시계, 장신구 등을 제거하여 오염 방지
- 탈수 예방을 위해 보호구 착용 전 수분을 보충하고 미리 화장실에 다녀옴
- 착용 후 오염, 파손이 있을 경우 처치, 행위 사이에 개인보호구 교체
- 속장갑이 젖을 정도라면 근무자 교대

○ 탈의(제거)

-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예: 격리병실 밖의 간의실 등)에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감염원이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
-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올바른 순서와 방법으로 탈의하여 의료폐기물 상자에 바로 버림

□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 안내

○ 개인보호구 4종 착의 예시 순서



○ 개인보호구 4종 탈의 순서

1. 장갑을 벗는다. 한 손으로 반대편 장갑을 벗겨 손에 쥐고 장갑이 벗겨진 손으로 남은 장갑을 조심스럽게 벗겨 말아서 버린다.	2. 속장갑을 착용한 경우 속장갑을 소독하고, 속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손 위생을 시행한다.
3. 가운의 환자 접촉 부위를 안으로 밀어주면서 신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탈의한다.	4. 손 위생을 시행한다.
5. 고글 혹은 안면보호대 앞면을 만지지 않고 제거한다.	6. 손 위생을 시행한다.
7. 마스크를 제거한다.	
8. 손 위생을 시행한다.	9. 속장갑(착용한 경우)을 제거한다.

불임 2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

참고 :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질병관리본부, 2017)

1. 일반원칙

- 감염병 증상이 있는 환자는 전파 가능성에 있는지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평가한다.
-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주의를 준수한다.
- 의료기관은 의료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한다.
 - * 전파의 위험도 평가, 개인보호구 선택과 사용, 효과적인 손위생 방법, 표준주의 지침

2. 표준주의: 호흡기 예절

- 의료종사자들은 환자와 가족, 방문객을 대상으로 손위생과 호흡기 예절에 대해 안내한다.
- 병원 입구와 눈에 잘 띠는 장소에 호흡기 예절과 관련한 포스터를 게시한다.

<호흡기 예절>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바로 휴지통에 버리고, 휴지가 없다면 옷소매를 이용하도록 한다.
-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개를 돌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도록 한다.
- 다른 환자와 1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 병동과 외래의 대기 장소에는 손위생과 관련한 물품을 제공하고 손위생 방법을 안내한다.
- 급성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환자와 동반인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접하는 장소(출입구, 선별구역, 접수창구, 대기장소 등)에서부터 호흡기 예절을 준수하도록 안내한다.

3. 표준주의: 환자의 이동과 배치

-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을 전파할 위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1인실에 두도록 한다.
- 1인실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 가능한 감염 전파경로
 - 추가 주의조치가 필요한 감염 유무
 - 환경오염 정도와 주의 조치를 지키기 어려운 상태의 정도
 - 분비물 또는 배설물의 조절 가능 유무
 - 다른 환자에게 전파될 경우 파급 효과의 크기
 - 병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를 의료기관 내, 그리고 의료기관 간 이송하는 것을 되도록 피한다.

4. 표준주의: 치료장비와 기구관리

-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될 수 있는 장비와 기구의 설치, 이동, 관리에 대한 지침과 정책을 수립한다.
- 혈액이나 체액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장비와 기구를 다룰 때에는 예상되는 오염 수준에 따라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5. 표준주의: 환경관리

- 환자의 접촉 수준과 오염 정도에 따라 환경 청소지침과 정책을 수립한다.
- 환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거나 환자가 자주 만지는 물건과 환경 표면은 병원균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주 청소하고 소독한다.
- 병원 환경은 육안적으로 깨끗해야 한다. 필요하지 않은 물품과 장비가 없어야 하며 물품이나 환경의 표면에는 먼지와 흙이 없어야 한다.
- 소독제는 허가 기관의 공인된 것을 사용하고 제조사의 사용지침을 따라야 한다.
- 유행상황에서 환경소독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환경 오염으로 인한 전파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사용 중인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지 고려하여 다른 소독제로 변경할지를 검토 한다.
- 의료기관 내 소아구역 혹은 대기공간에서 아이들을 위한 시설, 장난감에 대한 정기적 청소와 소독에 대한 지침/ 정책을 수립 한다.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장난감 관리에 대한 정책과 지침 수립 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세척과 소독이 용이한 장난감을 사용한다.
 - 텔이 있는 장난감은 비치하지 않는다.
 - 대형 고정식 장난감은 적어도 매주 또는 눈에 띄게 더러워진 경우에는 바로 청소하고 소독한다.
 - 장난감을 입에 댈 경우에는 소독한 후 물로 충분히 헹궈준다.
 - 장난감 세척 및 소독이 필요한 경우 즉시 시행하거나 다른 장난감과 분리하여 별도로 지정된 라벨이 붙어 있는 용기에 보관한다.
- 모든 의료종사자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진료 환경의 유지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환경과 장비의 청소와 오염제거에 책임감을 가지도록 한다.
- 병원균에 의한 환경 오염이 감염의 확산과 관련이 의심되는 경우 청소 수준을 높인다.

붙임 3

멸균 및 소독 방법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5호(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4조 관련

[별표1] 멸균 및 소독방법 (제4조 관련)

	멸균	높은 수준의 소독	중간 수준의 소독	낮은 수준의 소독
대상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일부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구	비위험기구
노출 시간	각 방법마다 ()안에 표시	20°C 이상에서 12-30분 ^{1,2}	1분 이상 ³	1분 이상 ³
고열멸균: 증기 혹은 고열의 공기 (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증기멸균의 경우 3-30분)	글루타르알데하이드 혼합제품 (1.12% 글루타르알데하이드 + 1.93% 폐놀, 3.4% 글루타르알데하이드 + 26% 이소프로판올 등)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70-90%)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70-90%)	차아염소산 나트륨 (1:500으로 희석 하여 사용, 검사실이나 농축된 표본은 1:50으로 희석)
에틸렌옥사이드 가스 멸균 (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1-6시간의 멸균시간과 8-12시간의 공기 정화시간 필요)	0.55% 이상의 올소-프탈 알데하이드	차아염소산 나트륨 (1:500으로 희석 하여 사용)	차아염소산 나트륨 (1:500으로 희석 하여 사용)	
과산화수소 가스프라즈마 (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내관 구경에 따라 45-72분)	7.5% 과산화수소	페놀살균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페놀살균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글루탈알데하이드 혼합제품 (1.12% 글루타르알데하이드 + 1.93% 폐놀, 3.4% 글루타르알데하이드 + 26% 이소프로판올 등) (온도와 농도 유의, 20-25°C에서 10시간)	과산화수소/과초산 혼합제품 (7.35% 과산화수소 + 0.23% 과초산, 1% 과산화수소 + 0.08% 과초산)	아이오도페 살균 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아이오도페 살균 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7.5% 과산화수소 (6시간)	세척 후 70°C에서 30분간 습식 저온 살균	-	4급 암모늄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0.2% 과초산 (50-56°C에서 12분)	차아염소산염(사용장소에서 전기분해로 제조된 것으로 활성 유리염소가 650-675ppm 이상 함유)	-	-	
과산화수소/과초산 혼합제품 (7.35% 과산화수소 + 0.23% 과초산, 1% 과산화수소 + 0.08% 과초산) (3-8시간)	-	-	-	

[주1] 소독제에 노출시간이 길수록 미생물 제거가 잘된다. 내관이 좀 거나 유기물이나 박테리아가 많이 존재하는 곳은 세척이 어렵기 때문에 10분간 노출이 불충분 할 수 있다. 결핵균과 비정형성 마이코박테리아를 사멸하는데 필요한 최소 노출시간은 2% 글루타르알데하이드는 20°C에서 20분, 2.5% 글루타르알데하이드는 35°C에서 5분, 0.55% 올소-프탈알데하이드는 25°C에서 5분이다.

[주2] 튜브제품들은 소독제에 충분하게 잠겨야 하며, 공기로 인해 잠기지 않는 부분이 있도록 주의한다.

[주3] 제품회사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제시된 시간을 준수한다.

<비고> 상기 명시된 멸균 및 소독방법 이외에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에 신고 및 허가받은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각 제품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 4

환기횟수와 환기율 및 비말핵 농도의 감소¹⁾

1. 자연환기시 환기횟수 및 환기율

창문/출입문 열기 정도	환기횟수(ACH)	환기율(Ventilation rate(l/s))
창문 열기(100%) + 출입문 열기	37	1300
창문 열기(50%) + 출입문 열기	28	975
창문 열기(100%) + 출입문 닫기	4.2	150

2. 환기율과 시간에 따른 비말핵농도의 감소

시간(분)	환기횟수(ACH)(%)			
	6	12	18	24
0	100.0 0	100.00	100.00	100.00
10	37.00	13.50	4.98	1.83
20	13.50	1.83	0.25	0.03
50	0.67	0.00	0.00	0.00
60	0.25	0.00	0.00	0.00

ACH, air changes per hour.

(풍속 1m/s, 길이 7m × 너비 6m × 높이 3m 면적의 방, 창문 1.5 × 2m², 출입문 1 × 2m² × 2 m² 조건가정)※ 코로나바이러스의 환경 내 평균 생존반감기는 30분~1시간으로 보고²⁾, 시간당 12회 공기순환 조건에서30분 이상 경과 후 1% 미만의 공기만 잔류됨³⁾

참고

코로나19 방역대응점검표(의료기관용)

코로나19 방역대응 점검표(의료기관용)				
점검일	2022-09-29	점검자 소속 이름	()	()
시·군·구	설립유형	기관명	기관담당자	연락처
직원 총원: ()명 ·의사()명, 간호사()명 ·간병인력()명		환자 수: ()명	점검유형	<input type="checkbox"/> 기관 자체점검 <input type="checkbox"/> 자체 현장점검 <input type="checkbox"/> 민관 합동점검

I. 대응체계

1. 기관의 코로나19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예(아래 참고 항목이 모두 포함된 경우임)
 부분 이행(아래 내용* 중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경우임)
 아니오(코로나19 대응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참고) 코로나19 대응계획에 포함된 사항 표기(복수)

- 대응팀 구성(병원장, 진료·간호부서, 시설 자원관리, 행정 부서 등 다양한 분야 포함)
 대응팀의 각 구성원별 역할 명시(업무분장)
 코로나19 발생 시 직원의 업무 배제 규정과 업무연속성 대책
 환자 또는 직원에서 코로나19 유증상 및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절차
 코로나19 환자의 감염예방·관리
 코로나19 대응 관련 보건당국 등 외부 협조 기관 담당자와 연락처

2. 기관의 감염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 예(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직무기술서에 따라 활동함)
 아니오

3. 감염관리자는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관련 교육을 받았습니까?

- 예(최근 1년내 교육을 받았음)
 아니오

4. 코로나19 대응계획에 대한 상황별 모의훈련을 시행하십니까?

- 예_모의(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실제 모의훈련 시행)
 예-실제(실제 집단발생으로 대응 후 체계 점검 시행)
 아니오

II. 시설·환경 관리, 자원 공급, 교육

5. 코로나19 확진(의심)환자를 위한 예비격리실을 마련하였습니까?

- 예(감염되지 않은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하여 다른 환자 출입 차단)
 아니오

1) Natural Ventilation for Infection Control in Health-Care Settings, WHO, 2009

2) Stability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under different environmental conditions, Eurosurveillance Weekly, 19 September 2013

3) Guidelines for Preventing the Transmission of Mycobacterium tuberculosis in Health-Care Settings, 2005 MMWR December 30, 2005 / Vol. 54 / No. RR-17

6. 코로나19 확진(의심)환자 관리 구역은 동선을 분리하여 다른 환자와 접촉되지 않게 오염구역 설정계획을 마련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환자 관리를 위한 오염구역을 설정, 이동동선과 일반 환자 접촉과 분리)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 기관 내 각 장소별 환기는 적절히 시행하고 있습니까?(복수응답 가능) <input type="checkbox"/> 예(공조 설비와 자연환기 병행) <input type="checkbox"/> 부분 시행(공조설비 없이 자연환기로 출입문, 창문 통한 환기) <input type="checkbox"/> 아니오(기계환기 및 자연환기를 적절히 할 수 없음)
8. 개인보호구 탈의구역을 마련하고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여 적절히 관리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물리적으로 구분된 장소) <input type="checkbox"/> 아니오(지정된 개인보호구 탈의구역 없음) * 손소독제, 탈의절차 게시, 거울, 폐기물함 등
9. 환경 표면은 적절히 청소와 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적절한 소독제와 소독방법을 명시한 지침 구비, 지침에 따라 실행점검)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0. 코로나19 감염예방 방법에 대해 직원교육·훈련을 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최근 1년 중 전 직원 모두 완료) <input type="checkbox"/> 부분 시행 <input type="checkbox"/> 아니오(미시행)
11.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개인보호구 및 방역물품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급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보호구와 손소독제, 소독제 등 물품 적절히 공급)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2. 병실, 진료실과 다중 이용 공간 등에 손소독제가 적절히 비치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손소독제가 필요한 장소에 비치,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비어있지 않아야 함)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II. 직원 관리
13. 모든 직원은 환자와 함께 있는 공간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일부 미착용인 경우 아니오로 답변)
14. 모든 직원은 손위생이 권고되는 상황*에서 손위생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아래 상황에서는 반드시 수행) <input type="checkbox"/> 부분 수행(50% 이상 수행) <input type="checkbox"/> 아니오(50% 미만인 경우 아니오로 답변) * 업무 시작전, 환자 접촉 전·후, 무균적 시술 전,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기타 오염물질과 접촉한 후, 환자의 주변 환경에 접촉된 경우, 장갑 착용 전·후
15. 매일 직원의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증상 확인 자료 보관, 증상발생 시 검사 및 업무제한 등) <input type="checkbox"/> 아니오(미시행)

VI. 간병 인력 관리								
16. 모든 간병인력은 환자와 함께 있는 공간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일부 미착용인 경우 아니오로 답변)								
17. 모든 간병인력은 손위생이 권고되는 상황*에서 손위생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아래 상황에서는 반드시 수행) <input type="checkbox"/> 부분 수행(50% 이상 수행) <input type="checkbox"/> 아니오(50% 미만인 경우 아니오로 답변) * 업무 시작전, 입소자 접촉 전·후, 오염물 처리 후, 화장실 다녀온 후, 식사 전, 업무 종료 후, 오염 장소를 접촉한 후 등								
18. 매일 간병인력의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증상 확인 자료 보관, 증상발생 시 검사 및 업무제한 등) <input type="checkbox"/> 아니오(미시행)								
19. 간병인력은 정해진 구역 외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활동 가능한 구역 설정, 구역 외 이동 자체 등) <input type="checkbox"/> 아니오(미시행)								
V. 환자 관리								
20. 환자에게 감염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이나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손위생, 마스크 착용, 정해진 구역 외 이동 제한 등)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1. 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거의 대부분 착용, 80% 이상) <input type="checkbox"/> 부분 수행(과반수 이상 착용, 50% 이상) <input type="checkbox"/> 아니오(50% 미만)								
22. 환자의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매일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 검사, 격리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증상 확인 기록, 증상발생 시 격리 및 검사 등 시행) <input type="checkbox"/> 아니오(미시행)								
VI. 면회 방문객 관리								
23. 면회 및 방문 제한에 대한 규정을 안내하고 준수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미시행)								
24. 면회객, 방문객이 출입하는 경우 호흡기 증상 등 감염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미시행)								
25. 면회객, 방문객 출입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을 안내하고 확인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마스크 착용 안내, 손소독제 비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미시행)								
○ 점검 결과(총 25개 항목)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예</th> <th>부분 시행(항목 번호)</th> <th>아니오(항목 번호)</th> </tr> </thead> <tbody> <tr> <td>항목 수</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예	부분 시행(항목 번호)	아니오(항목 번호)	항목 수			
	예	부분 시행(항목 번호)	아니오(항목 번호)					
항목 수								
○ '부분 시행' 또는 '아니오'의 항목이 있는 경우 조치 시행 필요								